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5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6년 5월 14일 (목) 15:00 ~ 17:15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경희, 이광호
(위원) 김 건, 김영도, 김 용,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이보미, 이슬기, 이 현,
장신호, 전은영, 최은옥.
(총 18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21인 중 18인 출석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2026년 국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2026년 제5차 회의' 이렇게 회의명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 중간에도 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특별위원회의 논의가 4월, 5월경에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보고서, 제안서가 속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작성 작업에 착수

해서 한 발 한 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높은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저도 메시지를 하나 냈는데, 지금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지혜를 모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학교공동체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2건의 안건과 1건의 자유토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입니다. 하나씩 챙겨보니까 규칙에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어서 그때마다 규칙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 두 번째로는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안)입니다. 제일 먼저 발족한 고교교육 특위와 인재강국 특위는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위도 순차적으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서 그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유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6월 회의에 김경희 상임위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래 이 문제가 오늘이 5차 회의인데 3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저와 양 상임위원님

들이 논의한 결과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국교위법 시행령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시행령을 간단히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당 전문위원회가 기존의 관행대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요청이 오면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회 의견을 물으면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상임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물었더니 의외로 약간 소극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오히려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공동위원장 체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차 회의에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 취지는 이것저것 떠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과업을 많이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을 치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그냥 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모두 항상 대승적으로 사고하고 모든 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③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공개
- (보고안전)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안)’ 비공개
- (자유토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논의’ 비공개

4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9차 회의가 4월 30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수록된 총론 구성안에 대한 발제와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판단의 외주화나 시민성의 위기 관련한 발제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18차, 제19차, 제20차 회의가 각각 4월 15일 수요일, 4월 22일 수요일, 5월 13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세 차례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관한 검토와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제19차 회의에서는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가 4월 16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한 보고와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각 특별위원회의 주요 내용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가 4월 20일 월요일 4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성취평가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가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의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분과장 회의가 4월 10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분과장 회의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형식이나 내용 보완 및 용어 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제11차, 제12차 회의가 4월 15일 수요일, 4월 29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11차 회의에서는 고교내신 평가 관련 외부 발제가 있었고, 12차 회의에서 학생부 등 학생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문해력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문해력 특별위원회 위촉식은 4월 29일 수요일에 개최되었고,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문해력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문해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발제와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제8차, 제9차, 제10차 회의가 각각 4월 10일 금요일, 4월 24일 금요일, 5월 8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특위 제8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민성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한 발제가 있었고, 제9차 회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과 관련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0차 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활성화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제2차 회의가 4월 30일 목요일, 5월 6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사교육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사교육 구조와 선행 사교육 문제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제14차, 제15차, 제16차 회의가 각각 4월 21일 화요일, 4월 28일 화요일, 5월 12일 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보완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제9차, 제10차 회의가 4월 10일 금요일, 4월 24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특별위원회들이 활동 마무리 차원의 보고서 집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재강국 특별위원회도 제12차, 제13차 회의가 각각 4월 15일 수요일, 4월 29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인재강국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서에 담을 정책의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9차, 제10차 회의가 4월 15일 수요일, 5월 13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9차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분야 정책 검토 과제에 대해서 교원단체의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있었고, 제10차 회의에서는 관련 과제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함께 모여서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제8차, 제9차 회의 및 AI시대 학습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4월 29일 수요일에 개최되었던 AI시대 학습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제8차 회의, 제9차 회의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요. 4월 29일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각각 발제하고 연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이 4월 23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 비전을 공유하고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단의 제7차~제10차 회의가 매주 개최되었습니다. 통합지원단에서는 계속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세부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각 특위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함께하시는 자문위원단 제3차 회의가 5월 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특별위원회 결과 활용방안(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금 보고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중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건 관련된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변경을 요청했는지.
- (사무처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교육부의 역사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8페이지에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분과장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 논의를 하는데 분과장 회의라는 것은 고등교육 특별위원회에는 분과장 회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 (간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보고서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 정리 작업을 분과장이 모여서 그 분과마다의 내용을 합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이현 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 (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 …)

없으시면 보고한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많은 특위의 활동이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중 근래에 뜨는 특위는 문해력 특위입니다.

(웃 음)

언론의 관심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문해력 특위가 순항하면서 문해력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잘 모아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특위가 발족했는데 특위 위원장께서 첫 발제로 장문의 발제를 위원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위원들을 다 분발하게 만

들면서 스타트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⑤ 주요 내용

가. (심의·의결안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 (간사) 그러면 심의·의결안전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발전총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안전집 16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입니다. 운영규칙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소위원회 관련입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 본 위원회는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위원 위촉 관련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조금 더 명문화하였습니다.
- 위원의 의무 관련입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결격사유를 29조와 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 관련한 규정과 해촉 관련한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무윤리서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존속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구대비표가 17쪽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본문을 보면서 잠깐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청서로 된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회 위원 관련한 위촉 부분이고요. 특히 31쪽의 28조, 29조가 조금 더 소속 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직무윤리서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29조의 각 호를 보시면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 및 자료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3. 소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4.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원의 의무로 조금 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30조 결격사유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 2호, 3호 중 특히 3호에 정당법 22조에 따른 당원을 넣었고요. 31조(해촉 등)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의 책무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붙임으로 34~36쪽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운영규칙 개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문된 것을 눈으로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 청서로 된 부분을 눈으로 같이 보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페이지를 열어주시겠습니까?
-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우리 스스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30페이지를 보면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이번의 중요한 개정사항

입니다.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 구성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④ 공무원과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 23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③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는 구성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 24조(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등’이라고 해서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 위원회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 26조(회의의 방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주의를 표명하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회의 방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께서 허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27조(결과 등의 공개)는 활동보고서 제출. 28조(직무윤리서약서 등), 29조(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통해 본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30조에는 결격사유를 적었습니다. 31조에는 해촉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도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26조(회의의 방청 등)이 신설 조항인데요. 거기에 ‘방청하고자 하는 자’의 대상이 누군가요?
- (위원장) 일반국민입니다.
- (김영도 위원) 공개라는 개념에서는 참 반길 만한데요. 1일 전까지 허가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제를 하는 느낌입니다.
- (위원장) 허가 없이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김영도 위원) 이전에는 아예 방청이 안 됐었습니까?
- (위원장) 그렇습니다. 가령 일주일 전보다는 1일 전까지가 훨씬

더 허용적입니다. 자유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 (김영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김영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드는 생각인데, 결격사유 등을 간단하게라도, 추상적이라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님처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도 위원님이 접근하신 방향을 보니까 이 규정을 보거나 시민들께서 방청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혹시 오해가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 문장 속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는 위원장의 재량적 판단 권한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읽힙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허가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소속위원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거지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방청 신청자가 방청을 요청하는 사유가 신청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정도로 한번 운영해 보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고치지요.
- (연취현 위원) 예. 지금 민원이 워낙 세서 민원이 생기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있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드시 필요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위원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의 판단에 맡겨 보지요.
- (김영도 위원) 예.
- (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김용 위원) 내용상 의견은 아니고 표현에 관한 문제인데요. 29페이지 21조 3항입니다.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법상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그 문장이 좋아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더 읊어주시겠습니까?
- (김용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 (김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30페이지 23조의 3항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조 ② ‘제1항에 따른 방청이 있는 경우 방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방청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방청의 방법 등’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제2항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 (이광호 상임위원)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위원장)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의 2개는 ‘위촉’과 ‘구성’이라는 단어 2개를 쓰면서 괜히 복잡해졌습니다. 다 메모되었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1조 3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30페이지 23조 3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손덕제 위원)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할 수 있도록’은 할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위촉이 되는 것을 노력한다.
- (이광호 상임위원) 아예 ‘위촉’보다는 ‘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것은 ‘위촉할 수 있도록’이 낫습니다. ‘위원은’이 주어 가 아니고 ‘위원은’은 목적어의 의미입니다.
- (사무처장)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은’이라고 하시는 것보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사무처장의 문구 그대로 메모했습니까? 사무처장이 불러주신 대로 하시지요.
- (손덕제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 (사무처장) ‘위촉’이라는 동사를 썼을 때는 목적어로 ‘위원을’이라고 하시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요. ‘위원은’이라고 하면 주어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구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처장님, 제가 그냥 정할게요. 이것은 김 용 위원님이 처음에 불러준 문장이 법률 문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것은 주어가 아니고요. 목적어를 ‘은’으로 하면서 그다음 주어는 생략이 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29조 3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30조 3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조 2항 ‘제1항에 따른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민봉 위원님.

- (유민봉 위원) 지금 사소한 문장의 흐름까지도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률을 읽을 때 늘 ‘뭘뭘하는 자’ 이게 저한테는 늘 어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굉장히 통용되는 것이라서 이것을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문해력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방청하고자 하는 자’, ‘지명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자’를 ‘사람’으로 바꿀 때 법률의 통상적 용어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도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으로 바꿔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자’를 전부 ‘사람’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방금 김 용 위원님 제안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내용대로 하고, 방금 유민봉 위원님의 발언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수정하는 案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서를 읽어야 되네요.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은 직전에 위원장이 고지한 사항대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차 기 회 의 일 정 등 에 관 한 사 항

- 2026년 제6차 회의는 2026년 6월 11일 개최

☐ 7 마 무 리 말 씀 및 폐 회

- (위원장) 오늘은 평소보다 회의 종료가 양호한 편입니다. 2시간 15분 만에 많은 내용들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